■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의2서식] <신설 2019. 6. 12.>

[ ] 폐자동차재활용업 [ ] 휴업 [ ] 폐업 [ ] 폐가스류처리업 [ ] 재개업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(대표자)	④ 허가(신고)번호
	⑤ 주소(사업장 소재지) (전화번호:)	
	⑥ 업종 [ ]파쇄재활용업 [ ] 파쇄잔재물재활용업 [ ] 폐가스류처리업	

⑦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	연월일	. . .	⑧ 재개업 예정 연월일 (휴업인 경우)	. . .
⑨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	사유			

보관폐기물의 처리 결과

(단위 : 톤)

⑩ 폐기물종류	⑪ 보관량	⑫ 처리결과		
		처리일자	처리량	처리방법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[ ]폐자동차재활용업 [ ]폐가스류처리업 [ ] 휴업 [ ] 폐업 [ ] 재개업 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1. 휴업·폐업의 경우 가.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. 재개업의 경우 가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